

화순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4. 10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4. 10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4. 17 (제5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설 명 자 : 문화공보실장 최 영 옥
- 나. 제 안 사 유
 - 화순군민의 상 시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적, 수상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상 수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.
- 다. 주요내용
 - 제1조(목적)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
 - 제2조(수상대상자)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나 문화, 예술, 군민화합, 미풍양속의 선양 등 군민표상이 될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
 - 제4조(수상후보자 추천) 군의회의장,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이 수상 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
 - 제8조(시상)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병항)

- 동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민의 상 시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상 수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" 생 략 "

6. 심 사 결 과

「원 안 가 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민 의상조례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 - 40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4. 10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화순군민의 상시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적, 수상대상자, 수상후보자 추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상수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.

2. 주요 골자

- 목적(안 제1조)
 -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수상대상자(안 제2조)
 -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화순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자나 문화 예술의 창달, 군민의 화합, 미풍양속의 선양등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
- 수상후보자 추천(안 제4조)
 - 군의회 의장,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이 수상 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
- 시상(안 제8조)
 -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

화순군민의상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민의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화 순 군 민 의 상 조 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상대상자) 군민의 상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화순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나 문화 예술의 창달, 군민의 화합, 미풍양속의 선양 등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.

제3조(군민의 상 종류) 다음 각호의 부문에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.

1. 지역사회 발전 유공부문
2. 효행부문
3. 교육문화 체육부문
4. 새일꾼상 부문

제4조(수상후보자의 추천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의회 의장,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이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 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.

제5조(군민의 상 심사)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화순군의회 의원 10인을 포함하여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 18인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제6조(수상자의 결정)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 후보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.

제7조(수상방법 및 부상) ① 제6조에 의하여 심사 결정된 수상자의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금 5돈의 범위내에서 상금, 상패 기타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.

제8조 (시상)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군수가 수여한다.

제9조 (이중 수상금지)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.

제10조 (포상대장 등재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(앞 면)

공 적 조 서			
주 소			
생년월일		근무기간	
수공기간		소 속	
포상종류		직위성명	
성 명	(한자)	부 상	
공 적 사 항			
(6하 원칙에 의할 것)			

(뒷 면)

중 요 경 력

년 월 일	이 력	년 월 일	이 력

과 거 포 상 기 록

년 월 일	이 력	년 월 일	이 력

(별지 제2호 서식)

제 호

상

장

○○상

주소 또는 소속

직 성명

(상 문)

년 월 일

화 순 군 수 ○ ○ ○ (인)

